

일·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


지원대상

-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



지원요건

-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
 - * 근무혁신 이행: 대한민국 일·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(대한민국 일·생활균형 우수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)
- 인프라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준수
 - * (구축형 인프라) 3년, (사용료 방식 인프라) 개별 약정기간(최대 3년)

종류	지원시스템 예시	지원방식
유연근무 (근로시간 단축)	• 근태관리 시스템 - 그룹웨어, ERP, 출·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(인사·노무관리 프로그램,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, 출·퇴근 기록 장비 등)	직접지원 (설치비 또는 사용료)
재택·원격 근무혁신	• 보안시스템 - VPN, 원격접속, 정보 유출 방지, 자료 백업 및 복구,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	

* PC,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임차비용은 지원 제외



지원내용

-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하되, 유연근무 인프라는 투자금액 대비 70%, 최대 750만원을 지원

지원금 구분	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
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	5/10
근무혁신 인프라 (대한민국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)	8/10
유연근무(근로시간 단축) 인프라 (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)	7/10

* '23년 이전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경우는 '23년도 고시 [별표 10]의 규정에 따름



신청자격

-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
- 「고용보험법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·시설·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
-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신청 가능



제출서류

-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일·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견적서



문의



-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: 고용24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24.go.kr>)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